

연구원 관리 시행세칙

제정 2001.10. 1 시행세칙 제11호

개정 2009.11.30 시행세칙 제27호

개정 2012.12.20 시행세칙 제79호

개정 2018.4.11. 시행세칙 제160호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직제규정」 제5조제4항과 「인사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정직원 중 연구직의 임용 및 처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급 및 대우수준) 연구직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일반직원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고, 그 해당 직급에 준하여 대우한다. 다만, 토지주택연구원장(이하 “연구원장”이라 한다)을 연구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준하여 대우한다.

제3조(정원)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 인력수급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연구원 인력수급 및 운용계획을 조직부서장에게 통보하고, 조직부서장은 소요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원 정원을 책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직무관리) ① 연구원은 전문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정직으로의 직무전환, 현업부서 근무, 겸직, 대내·외 파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특정직으로의 직무전환, 현업부서 근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채용원칙) ① 연구원의 채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반직원이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채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세부채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연구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, 소요인원, 자격요건 및 대우 등이 포함된 세부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장과 협의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.

제6조(임용자격) 연구원 임용자격기준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「인사규정」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7조(전형방법) ① 연구원 채용은 제1차 전형, 제2차 전형 및 제3차 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2차 및 제3차 전형은 제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전형 : 서류심사
2. 제2차 전형 : 연구역량심사
3. 제3차 전형 : 면접심사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원이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전형위원) 연구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전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2. 해당 전공분야의 관련 실무에 능통한 일반직원
3.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원

제9조(임용 및 임용기간) ① 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을 거쳐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별지 서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 제1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.

③ 연구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제10조(수습기간) ① 연구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. 다만,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원이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.

② 수습기간 중의 연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1조(초임연봉등급) ① 연구원의 직급별 초임연봉등급은 제2조에 따른 해당 직급의 최하위 연봉등급으로 하며, 공무원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

군(軍)경력에 따른 연봉등급 가산은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 제21조를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력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하여 연봉등급을 가산할 수 있다.

제12조(승진임용) ① 연구원의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은 종합근무평정, 다면평가,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을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용한다.

③ 승진심사 시기는 일반직원의 승진심사와 연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승진의 제한에 관하여는 「인사규정」 제25조를 준용한다.

⑤ 그 밖에 연구원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승진소요 최저연수 등) 연구원의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직급대우 운용에 대하여는 「인사규정」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.

제14조(승급) 연구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「인사규정」 제24조를 준용한다.

제15조(재임용) 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종합근무평정, 다면평가, 연구실적 및 성과, 공사 및 토지주택연구원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5일전까지 재임용 심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재임용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인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인사위원회 결과를 연구원장, 연구부서장 및 임용기간 만료예정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원은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재임용하며,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재임용한다.

1. 2차 임용계약 : 재임용 계약일로부터 3년. 다만, 재임용 계약시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3차 이후 임용계약 : 무기계약으로 한다. 다만, 재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약기간 이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⑤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2회 연속 최하위 5퍼센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

제16조(종합근무평정) ① 연구원의 승진, 재임용 및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.

② 종합근무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(연구원의 보수) ① 연구원에게는 직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종합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특별승진 및 특별승급) ① 종합근무평정 결과 우수자 및 원가절감, 설계 및 품질개선, 경영개선 등으로 공사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또는 승급(이 경우 2등급 이내)시킬 수 있다.

② 연구원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.

제19조(국외 공동연구) ① 연구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의 대학,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대상자 선정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0조(신분보장) 연구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1조(복무)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취업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2조(임용계약의 해지) ①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「인사규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2.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3회 연속 최하위 5퍼센트에 해당될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장은 대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원면직) 연구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정년) 연구원의 정년은 「인사규정」 제41조에서 정한 일반직원의 해당직급 정년을 준용한다.

제25조(직무발명양도 및 직무업적사용금지) ① 연구원의 직무발명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여야 하며, 직무수행상의 업적을 개인명의로 발표 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양도에 대하여는 따로 보상할 수 있다.

제26조(연구활동비의 지급) 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을 위한 조사, 정보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및 능률제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포상) ① 연구원이 「인사규정」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종류, 기준, 시기 등은 「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28조(징계) ① 연구원이 「인사규정」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 종류, 기준, 시기 등은 「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29조(준용) 그 밖에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취업규칙」, 「인사규정」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<2009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① 종전의 한국토지공사 「전문연구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임용된 전문연구원 및 대한주택공사 「전문직연구원 관리준칙」에 따라 임용된 전문직연구원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연구원으로 본다.

② 종전의 한국토지공사 「전문연구원 내부공모시행계획」에 따라 공모에 응하여 선발된 자로서 2009년 10월 1일 현재 선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전환시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채용절차 및 전형절차는 시행하지 아니한다.

부칙<2009.11.30>

이 시행세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2. 12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원의 재임용 특례) ① 이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근속기간이 6년 미만인 연구원은 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제1호로 정한 기간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6년이 도래하는 연도에는 반기별로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임용한다.

- ② 이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근속기간이 이미 6년을 경과한 연구원은 제 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-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 및 재임용 절차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.

부칙<2018.04.11.>

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(제9조제2항 관련)

연구원 근로계약서

사용자 및 근로자는 공사의 연구원 관리 시행세칙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당사자

사용자	상 호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			
근로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
2. 근로계약 기간 : ____개월(. . .부터 까지)

※ 수습기간 (. . . .부터 까지)

3. 복무 :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침·명령에 따라야 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, 근로시간 동안 주어진 직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한다.

4. 손해배상 :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근로자는 공사에 변상하여야 한다.

5. 근로조건

가. 근무 및 휴식시간

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,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.

②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

③ 위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, 업무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나.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

구 분	시업시각	종업시각	휴식시간	1일 근무시간	비 고

다. 휴일 · 휴가

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는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6. 적용

연구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인사규정, 보수규정, 복지후생규정, 퇴직급여규정 등과 각 규정의 하위규정을 준용한다.

첨부 : 서약서 1부.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.

년 월 일

사용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(인)

근로자 : (인)

서 약 서

본인은 귀 공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

- 공사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, 공사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.
-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결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-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겠으며,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정치활동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.

본인은 수습사원으로 발령을 받음에 있어서

- 실무수습 종합성적이 60% 미만이거나 수습기간 중 그 자질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
- 신체검사, 전력조회, 신원조회 등의 결과가 공사 제반규칙에 위배되거나, 제출한 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정당한 임용발령의 취소 또는 직권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본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

재직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귀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변상하겠습니다.

이상과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